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접경지역지원기금 설치〉

■ 박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498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참고사항	1
IV . 검토의견	2
1. 점경지역지원기금 설치(안 별표 2)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정의원 등 15인

나. 발 의 일 : 2024. 11. 12.

다. 회 부 일 : 2024. 11.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 지원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접경지역지원기금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맞춰 기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III.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1. 접경지역지원기금 설치(안 별표 2)

현행	개정안
○ 별표 2 <신설>	○ 별표 2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접경지역지원기금)

현행법 제5조¹⁾에 따라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박정위원이 대표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여 ‘접경지역 지원기금’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에 추가하려는 것임.

1)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접경지역지원기금’의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법률명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명	접경지역지원기금
재 원	◦ 정부의 출연금 ◦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기금의 운용수익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용 도	◦ 농어업·임업 등 산업기초시설의 확충·개선 ◦ 전기·통신·가스 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의 확충·개선 ◦ 주택·상하수도 등 주거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 관광자원의 개발 ◦ 도로·항만·공항·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의 정비와 확충 ◦ 교육·의료·후생 시설 등 문화복지시설의 확충 ◦ 민방위 정보, 대피시설 등 주민안전시설의 정비 및 확충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이 수행하는 남북 교류·협력 사업 지원
관 리	◦ 행정안전부장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접경지역법개정안”이라 함)은 접경지역 발전 및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지원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에 잇닿아 있는 시·군 및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지역 중 민간인

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군을 ‘접경지역’으로 정의²⁾하고, 접경지역에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비의 지원, 교육·문화·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주민 고용 지원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접경지역 발전 및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접경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사회간접자본의 정비·확충 및 문화복지시설의 확충 등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지원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하여 온 접경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 및 생활 개선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동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상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설

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접경지역”이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이하 “민간인통제선”이라 한다) 이남(以南)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을 말한다. 다만, 비무장지대는 제외하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본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접경지역의 범위) 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본문의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군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2.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② 법 제2조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군을 말한다.

1. 경기도: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치하는 것으로, 접경지역지원기금은 정부 등의 출연금, 타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어 접경지역 지원과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자체수입 확보 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재원 조달이 곤란할 것으로 보이며, SOC사업이 다수를 차지하는 지역 개발사업의 특성상 신축적인 사업의 추진보다는 안정적인 투자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기금의 신설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므로, 과도한 기금설치 방지, 재원의 효율적 배분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14조³⁾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이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① 기금의 재원과 지출사업 간 연관성, ② 신축적인 사업추진의 필요성, ③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의 안정성, ④ 새로운 기금 도입의 상대적 효과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국가재정법」 개정안 심사 시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3)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것이 일반적임.⁴⁾

이에 개정안이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살펴보면 먼저 ‘기금의 재원과 지출사업 간 연관성’ 및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동 기금의 재원 중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경우 공익사업 등을 위한 복권기금의 성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99호)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복권법”이라 함)에서 정하고 있는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연간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5, 이하 “법정배분비율”이라 함) 중 일부를 접경지역지원기금에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의 기관·기금(이하 “법정배분기관”이라 함) 등에 배분하는 법정배분제도⁵⁾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접경지역지원기금이 법정배분기관에 포함되어 법정배분비율

4) 다만, 「국가재정법」 제14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기금 신설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국회에서 기금 신설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러한 타당성 심사 절차에 구속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는 있음.

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2.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3.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
4. 삭제 <2016. 3. 29.>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6.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
7. 지방자치단체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에 따른 복권수익금을 배분 받을 경우 사업추진의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법정배분제도는 복권법 제정 이전 기존 복권발행기관의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⁶⁾으로, 복권기금이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의 폐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다음으로 ‘신축적인 사업 추진 필요성’ 측면에서 보면, 접경지역지원기금의 용도로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가스 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의 확충·개선’, ‘주택·상하수도 등 주거환경의 개선’, ‘도로·항만·공항·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의 정비·확충’ 등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신축적인 추진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마지막으로 ‘새로운 기금 도입의 상대적 효과성’에 대해서는 현재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일반회계 사업으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비의 지원, 교육·문화·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주민고용 지원 등 여러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접경지역지원기금 관련 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6) 복권위원회, 2022 복권백서, 2022. 4, 309p

회계구분	세부 사업명	주요 내용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비고
지역균형 발전특별 회계	접경권발전지원 (자율)	접경거점지역 조성, 영종- 신도평화도로 건설, 임진각 관광지 유희부지 개발 등	49,849	45,627	행안부
일반회계	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장비확충	접경지역 민방위 대피시설 확충,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10,794 (680)	6,736 (1,900)	행안부
일반회계	개방형 수장고 및 정보센터 운영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개방형 수장고 및 정보센터 운영	1,421	1,309	문체부
지역균형 발전특별 회계	지역관광 다양성	섬 고유 생태문화자원을 활용 콘텐츠 개발, 관광편의서비스 개선, 브랜드 가치 구축홍보 등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5,150 (1,000)	4,635 (897)	문체부
관광진흥 개발기금	한국형 지역관광 활성화 (DMZ 접경지역 관광 활성화)	DMZ 접경지역의 생태· 안보관광 자원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발굴을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	14,025 (4,156)	18,629 (2,956)	문체부

* 접경지역 지원예산이 내역사업일 경우 () 표시
자료: 기획재정부

한편,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인 접경지역법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동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2 <u><신 설></u>	별표 2 7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문의처
02)6788-5152